

국민 호흡건강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표준원,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2019. 6. 26.

LH 고객품질혁신단
2019. 7. 25.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2019.7.2.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추진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6월 28일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 7월 시행되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2019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4개 분야에서 10개 과제를 추진하여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영·유아, 어르신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등의 공기질 개선을 지원하고, 지하역사·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개선 및 관리를 강화해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한 시설별 이용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내공기 통합관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공기질 관리 관련 교육과 홍보, 정보공개 및 점검강화를 통해 공기질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LH, 국내 최초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LH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중 라돈 등 방사성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건축자재 방사성물질 저감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였다. 주요 관리대상 자재는 콘크리트·벽돌·도기류·타일·모르타르·석고보드·석재로 실내에 설치되는 무기성 건축자재 7개종이며, 라돈 외에도 건축자재에 포함된 자연 방사성물질의 관리기준을 담았다.

국내 신축 공동주택의 라돈농도 권고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령」에 따라 148Bq/m³ 이하이며, 정부는 이를 충족하는 건축자재 관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합동(국토교통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 TF를 구성해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환경부, 건축물 미세먼지 공동 대응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외부 미세먼지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실내공기질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 공동으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앞으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과 함께 민간 노인요양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까지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이 현행 기준 대비 1.5배 강화된다. 아울러 ‘제3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18~2022)’에 따라 지하·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신규설치 및 노후 환기설비 교체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특히 2019년에는 우선적으로 전국 52개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9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건축물에 설치하는 환기설비의 설치대상 확대, 공기여과기 성능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7.1.~8.12.)를 마쳤다.